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봉사하는 국민의 법원



성년후견제도와 가정법원의 역할

가외로부터의 보호 요청 후 보호제정하

2013. 7. 1.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

- ❖ 산업사회의 고도화, 고령화, 치매노인의 증가
- ❖ 금치산, 한정치산 용어의 부정적 의미
- ❖ 행위능력 획일화 제한과 사회적 편견
- ❖ 재산적 법률행위만 보호하는 문제점



성년후견제도의 지도이념

- ❖ 자기결정의 존중
- ❖ 잔존능력의 활용
- ❖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Normalization) 원칙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성년후견제도 시행준비과정

-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 가사소송법 개정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 ❖ 가사소송규칙개정
- ❖ 실체법의 이상은 절차법으로 완성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 ❖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 가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 관할
- ❖ 청구인
- ❖ 정신감정
- ❖ 본인의 의사 존중
- ❖ 후견사무의 감독



관할(가소법 제44조 제1의2호)

- ❖ 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
- ❖ 후견개시심판과 후속심판을 같은 법원에서 심판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독일과 일본의 경우 참조)



성년후견의 청구인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본인의 절차능력 명문 필요
- ❖ 민사소송법 개정 필요
- ❖ 가사소송법상 친족회관련 경과규정 없는 문제점



정신감정(가소법 제45조의2 ①)

- ❖ 의사에 의한 감정
- ❖ 다른 충분한 자료(특정후견의 경우 의사나 전문지식 있는 사람의 의견)
- ❖ 절차의 낭비와 감정비용
- ❖ 새로운 감정촉탁사항, 감정서, 진단서
- ❖ 절차구조(제37조의2)



후견사무 감독(1)

- ❖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서도 성년후견인의 불법행위나 신상보호불이행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함
- ❖ 필수기관인 친족회 대신 임의기관인 후견감독인제도 채택
- ❖ 가정법원의 역할 중요해짐



후견사무감독(2)

- ❖ 가소법 45조의4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 사무관, 가사조사관에게 후견사무, 재산상황조사를 명함
- ❖ 후견감독인의 선임
- ❖ 후견인권한범위 변경
- ❖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함(민법 제954조)



후견사무감독(3)

- ❖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 후견인의 임기제
- ❖ 후견감독 매뉴얼의 작성
- ❖ 전문가 활용
- ❖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터



심판의 고지와 통지(규칙 35조)

- ❖ 후견사건:심판→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효력 발생
- ❖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함(규칙 25조)
- ❖ 후견사건의 심판은 후견인, 후견감독인은 내용을 알아야 하고(고지) 본인도 알고 있음이 바람직(통지)



고지와 통지

- ❖ **고지의 범위 확대**
- ❖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 ❖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종료되는 후견계약에 기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게도 고지
- ❖ 후견개시등 심판의 뜻을 본인에게 통지



즉시항고(1)

- ❖ 가사소송법은 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즉시항고 허용(법 제43조)
- ❖ 광범위한 즉시항고 인정이 본인에게 유리한가?
- ❖ 청구기각심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만이 즉시항고권자



즉시항고(2)

- ❖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이 축소되었음을 인정하거나 확대되었음을 부정하는 심판: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심판, 특정후견 심판, 후견종료청구 기각심판
- ❖ 후견인, 후견감독인에 대한 교체요구 기각 심판(각 심판 청구권자가 항고권자 : 즉시항고 청구권자 범위 확대)



즉시항고(3)

- ❖ 사건본인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판 : 격리허가, 의료행위 동의, 거주용 건물의 매도 등 허가심판(후견인 변경청구권자에게 항고권인정, 지자체장까지)
- ❖ 후견인변경, 임의후견인해임,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



즉시항고(4)

- ❖ 즉시항고의 선별적 인정 이유 :
- ❖ 후견개시 후 후견사무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 ❖ 법원의 후견적조치나 감독처분성격
- ❖ 후견인권한범위나 후견인변경은 언제나 새롭게 청구할 수 있는 점



성년후견 개시 절차

일정한 자에 의한 청구

피성년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의사의 감정

성년후견개시심판 +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 · 한정 · 특정후견 비교(1)

- ❖ 성년후견의 근거 : 법률
-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



성년 · 한정 · 특정후견 비교(2)

- 성년후견인과 대리권 범위 :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성년후견인이 당연대리권 가짐(민법 제938조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위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동조 제2, 3항)



성년 · 한정 · 특정후견 비교(3)

- ❖ 한정후견의 근거 : 법률
-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있**음, 다만,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 됨(민법 제13조),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성년 · 한정 · 특정후견 비교(4)

- 한정후견인과 대리권 범위 :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성년 · 한정 · 특정후견 비교(5)

- ❖ 특정후견의 근거 : 법률(임의후견은 계약)
- ❖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임의후견도 같음)
- ❖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임의적,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해 대리권 향유



특정후견의 특징

- ❖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음
- ❖ 후견인 선임은 임의적
- ❖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이 각각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도 있음



특정후견 사건 절차

일정한 자에 의한 청구

피특정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의사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의견

특정후견개시심판 (특정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 ❖ 관련 법령 정비 필요(정신보건법 등)
-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및 신상과 관련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각종 시설의 처우와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내용 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 후견인을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



임법이 필요한 내용 정리

- ❖ 공익법인 성격의 후견감독인 필요
- ❖ 가사소송법의 경과규정 필요 :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받은 피후견인에게 친족회 동의를 받을 방법
- ❖ 후견인 임기제
- ❖ 특정 후견인과 신상결정 권한
- ❖ 소송 능력과 자격제한 임법정비



가정법원의 준비상황

- ❖ 성년후견제도 해설서 발간작업
- ❖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간담회 개최
- ❖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 성년후견 리플릿 제작
- ❖ 성년후견사건담당법관들의 커뮤니티개설, 매뉴얼과 예규 마련 계획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심판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 및 자원에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www.scourt.go.kr

성년후견제도 시행!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부터 시행됩니다.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이란 무엇인가요?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에는 어떤 종류의 후견이 있나요?

-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 사례

-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 **자녀** :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 :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임의후견).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3 후견에 관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4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5 재판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가사비용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6 법원은 어떤 심판을 하게 되나요?

-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나요?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8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9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10 후견인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등기



11 후견등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2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피후견인,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등기사항증명서를 어떠한 경우에 발급 받나요?

-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 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16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봉사하는 국민의 법원

서울가정법원



감사합니다.
유사워터다.

배인구